

報 道 參 考 資 料

題目: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결과

□ 경제자유구역위원회(위원장 :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)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음(서면의결)

□ 금번 국고지원 기준 마련의 의의

①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 국고지원을 규정하고, 지원시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

②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 경쟁국에 상응하는 수준으로, 가능한 한 빠른 기간내에 기반시설을 조성할 필요

☞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외자유치를 위한 선결요건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확실한 정책의지의 표현

※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늦게 출발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외국인에게 누가 더 나은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먼저 제공하여 투자를 유치하느냐가 성패를 좌우

※ 아일랜드는 부지의 무상 제공뿐만 아니라 공장까지 지어 제공하고 있고, 중국 상해 푸둥신구에서도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여 기반 인프라 시설을 구축중

③ 따라서, 금번 위원회에서는 향후 재정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일반원칙 및 기준을 마련

□ 주요 내용

-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직접 관련되고 외자유치 등의 선결요건이 되는 필수적인 기반시설 위주로 재정을 집중 지원하여
 - '08년까지는 연결도로 등 기초적인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
- 금년 하반기중 주요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예비비 지원
- 지원대상 확대(예시) : 지방도의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 진입 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국고 50% 지원, 공동구 등도 50%까지 지원
-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재정부 소관으로 편성,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

□ 기대효과

- 국고지원기준 마련을 계기로 국고지원이 본격화됨으로써 인천, 부산·진해, 광양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개발 활성화 및 외자유치 등에 기여 전망
- 도로 등 지원대상 유형에 따른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고지원의 효율성 및 일관성,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강화, 외국투자자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

資料 生産課 : 財政經濟部 經濟自由區域企劃團 TEL: 2110-2592

(과장 김순철, 사무관 윤범식)

企劃豫算處 産業財政1課 TEL: 3480-7623

(과장 위성백, 서기관 이범석)

<참고> 經濟自由區域 基盤施設 國庫支援 方案

1. 基本原則

【 현행 국고지원 대상사업 】

- ▷ 현행 지원기준을 적용하되,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재원 배정

【 현행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지방도 등 사업 】

- ▷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직접 관련되고 외자유치 등의 선결요건이 되는 필수적인 기반시설 위주로 지원
- ▷ 기타사업은 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재원조달
- ▷ 예산편성시 경제자유구역 지원예산은 소관부처의 별도 예산항목으로 추가 반영

* 현재 타법령에 의해 지원가능했던 사업을 현행 국고지원 대상사업,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추가적으로 지원가능하게 된 사업을 현행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지방도 등 사업으로 구분

2. 具體的 支援基準

□ 현행 국고지원 대상사업 : 현행 지원조건으로 우선적 지원

- 도로 : 고속도로(건설비50% 및 용지비), 일반국도(100%), 국지도·국대도(공사비), 산업단지진입도(100%)
- 철도·도시철도 : 일반철도(100%), 광역철도(75%), 도시철도·경전철(50%, 서울은 40%)
- 공항·항만 : 100%
- 상수도 : 시지역(광역시 제외) - 50%용자, 군지역 - 60%용자
- 하수도 : 광역시 - 50%용자, 일반 시·군 70% 용자
- 폐기물 처리시설 : 10~50% 보조

□ 현행 국고 미지원 대상사업

사업유형	국고지원 기준
○ 도로사업	▪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에 대해 총사업비의 50% 국고 보조 <진입도로> -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·일반국도·광역시도·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<간선도로> - 경제자유구역 지구를 횡단 또는 종단하는 도로 및 지구간을 연결하는 도로 ▪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총사업비 전액 지원
○ 공원·녹지시설	▪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비에서 부담하여 분양가에 반영 ▪ 다만, 공원·녹지시설 조성에 과다한 재원이 소요되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현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원
○ 광역시 상수도	▪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50% 용자 * 현행 기준으로는 시·군지역만 지원대상이나 인천·부산 지역에 대해서도 시지역 수준으로 지원
○ 공동구	▪ 시설 설치비의 50%범위내에서 국고 보조
○ 기타 기반시설	▪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비에서 부담하되, 필요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원 -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·군·구도 등